# 배재대학교 감염병 관리 규정

[제정 2017.3.15., 일부개정 2020.11.11.]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배재대학교(이하 "대학"이라한다.) 교육 및 연구 활동 중 발생 할 수 있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 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대학(원), 대학본부, 연구소, 부속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, 학생, 연구원 및 기타 이용자에게 적용한다.
- 제3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1. 감염병이란 사람에게 침입한 특정 병원체(바이러스, 세균, 곰팡이 등) 혹은 병원체가 생산하는 독성 물질(독소) 때문에 일어나는 질병을 말한다.
  - 2. 감염병 (의심)환자란 의료기관의 진료 결과 감염병 확진을 받았거나 의사 환자로 진단 받은 사람을 말한다.
  - 3. 유행이란 한 지역사회나 집단에 감염병이 평소에 나타나던 수준 이상으로 많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한다.
  - 4. 방역물품이란 감염병 (의심)환자 발생 시 발열감시, 전파차단 조치, 격리 및 평 상시 손씻기 실천, 학교 소독 등에 필요한 장비, 물품을 의미한다.

#### 제2장 감염병관리위원회

- 제4조(감염병관리위원회 설치)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염병관리위원회(이하 위원회'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입학처장, 학생 인재개발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산학협력단장, 생활관장, 대학교육혁신원장, 건 강증진실장, 간호학과 학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③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11.11.]

- 제6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회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 장이 된다.
  - ② 위원장이 유고시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20.11.11.>
- 제7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본다.
- 제8조(회의) ① 회의는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다.
  - ② 회의는 집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9조(심의사항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 - 1. 감염병 관리 규정 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 - 2. 갂염병 관리와 관련된 대학의 주요 정책 결정
  - 3. 감염병 총괄관리자 추천
  - 4. 방역물품 공급 및 방역에 관한 사항
  - 5. 감염병 위기대응계획의 검토
  - 6. 감염병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
  - 7. 기타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#### 제3장 감염병 관리 조직

- 제10조(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) ① 총장은 대학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감염 병 관리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.
  - ② 감염병 관리 조직은 감염병 총괄관리자, 발생감시팀, 예방관리팀, 학사지원팀, 행정지원팀으로 구성한다.

- ③ 발생감시팀은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담당하며,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, 감염병 관리자, 모니터링요원, 건강증진실 직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0.3.25.>
- ④ 예방관리팀은 평상시의 예방활동과 감염병 발생시의 대응업무를 담당하며, 예방관리팀장, 감염병 관리자, 건강증진실 직원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 3.25.>
- ⑤ 학사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학사의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며, 학사지원팀장, 교무처 수업담당, 단과대학 및 대학원 수업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.
- ⑥ 행정지원팀은 감염병으로 인한 각종 업무에 대한 행정지원을 담당하며, 총무인사팀장, 총무행정, 구매, 재무 담당자, 기획처 예산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.<개정 2020.3.25.>
- ⑦ 위기신속대응팀은 학부모 및 학생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응 업무를 담당하며 입학담당자, 등록담당자, 학사담당자, 기획담당자, 예산담당자, 생활관운영담당자 로 구성한다. <신설 2020.11.11.>
- ⑧ 감염병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감염병관리실무위원회를 두며 운영에 관한 내용은 따로 정한다. <신설 2020.11.11.>
- 제11조(감염병 총괄관리자)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체계 구축과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지휘를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총괄관리자를 지정한다.
  - ②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  - ③ 감염병 총괄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대학 내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총괄 지휘 담당
  - 2. 감염병 발생 감시 및 신고체계의 구축
  - 3. 감염병 관리 조직의 구성 및 관리
- 제12조(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) ① 대학 내 감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신고업무를 총괄하는 발생감시팀장으로 감염병 발생감시담당자를 지정한다.
  - ②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임명한다.
  - ③ 감염병 발생감시 담당자는 대학의 감염병 감시체계를 지휘감독하며, 감염병 발생 정보를 취합하여 감염병 총괄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
- 제13조(감염병 관리자) ① 대학 내 각 기구별로 감염병 발생 감시와 예방 및 관리의 실무적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한다.
  - ② 감염병 관리자는 각 기구의 책임자의 추천을 받아 감염병 총괄관리자가 지정하며, 이 때 감염병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기구에는 각 단과대학 및 대학원, 대학본부, 연구소, 부속기관, 생활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감염병 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담당 기구 내 감염병 발생 감시
  - 2. 감염병 발생 정보의 취합 및 보고
  - 3. 구성원들에게 감염병 관련 정보의 제공
  - 4. 예방접종 관리
  - 5. 감염병 (의심) 환자 관리
  - 6.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
  - 7.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
- **제14조(모니터링요원)** ① 대학의 감염병 (의심) 환자 발생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감염병 발생을 감시하는 모니터링요원을 지정한다.
  - ② 모니터링요원은 교수, 각 학과의 행정조교, 학생 대표, 동아리 대표 등으로 구성한다.
  - ③ 모니터링요원은 일상적인 학교생활 과정에서 의료기관에서 감염병 (의심)환자로 진단을 받은 학생이나 교직원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해당 환자가 소속된 기구의 감염병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15조(건강증진실) 건강증진실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다음의 임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0.3.25.>
  - 1. 감염병 발생 감시
  - 2. 학생 및 교직원용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 자료 제작 및 배포
  - 3. 감염병 예방 교육 및 상담
  - 4. 예방접종 실시(감염병 유행 차단 조치로 필요한 경우에 한함)
  - 5. 감염병 (의심) 환자 관리
  - 6. 보건소 역학조사에 대한 협조
  - 7. 기타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활동 등 [제목개정 2020.3.25.]

## 제4장 감염병 관리 및 조치사항

- 제16조(예방접종)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예방접종 확대를 통해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.
  - 1. 모든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예방접종 실시를 권고하고, 이에 대한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  - 2. 기숙사에 입소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입소 이전 MMR(Measles, Mumps, Rubella) 접종을 실시할 것을 안내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.
  - 3. 보건의료 전공 계열 학생들이 임상실습을 실시하기 이전 B형간염과 MMR(Measles, Mumps, Rubella) 접종을 실시할 것을 권장하여야 한다.
  - 4. 해외 전입 학생들의 국가필수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제17조(방역) ① 감염병 총괄관리자는 대학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  - ② 갂염병 (의심) 환자 발생 또는 유행 시 임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8조(시행세칙)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<2020.3.25.> (직제 규정)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1월 11일부터 시행한다.